

보다 안전한 미래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우)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 280(수서동, 로즈데일오피스텔 1828호) / Tel 02-567-1307/ Fax 02-567-1337

www.assi.or.kr E-Mail : assi1307@naver.com 담당 : 박용복국장 (H·P) 010-8688-5619

문서번호 시협 2019 - 103호

시행일자 2019. 4. 4.

수 신 국토교통부장관

참 조 시설안전과장

선				지	
결				시	
접	일자			결	
	시간			재	
수	번호			·	
				공	
처	리	과		람	
담	당	자			

제 목 시설물내진성능평가 기술자의 자격요건 개선 건의

1. 국가 시설물의 안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에 경의를 표합니다.
2.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하는 ‘시설물 내진성능평가’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술자의 자격이 기존 법령과 부조화되어 일선 발주기관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이의 개선을 건의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선(안)

기존규정	개선(안)	사유
<p>「기존시설물(건축물)내진성능평가요령」 1.1.2 평가자의 자격 신뢰할 만한 평가를 위해서 구조물의 내진성능 평가자는 지진공학 및 내진설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구조기술사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구조전문가로 제한한다. 다만, 이 요령의 3.1.1에서 규정한 정형적 구조를 가지는 건물의 경우 일반 건축구조전문공자도 이 요령에서 제시하는 예비평가시트를 사용하여 예비평가를 할 수 있다.</p>	<p>[1안] 평가자의 자격을 삭제하는 (안) [2안] 관련분야의 경험이 있는 특급기술자</p>	<p>(1)한국시설안전공단의 교량 등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는 기술자의 자격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음. (2)현행 국토교통부의 자격기술자는 역량지수(ICEC) 종합점수(학력+경력+자격+교육이수)제도를 통하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 교육도 이에 따르고 있음.</p>

나. 참고로

- (1) 현재 대부분의 내진성능평가는 국토교통부(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요령’에 따라 수행하고 있음.
- (2)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시설물 내진성능평가의 경우 용역시에 우리 협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는 특정 자격이 기술사를 배제하고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설계 또는 보강 설계에서만 다른 법령에 따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첨부 (1) 내진성능평가 관련 법규 비교 1부.

(2)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관련 제도 비교 1부. 끝.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